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44호 2021. 9. 16.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68호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--- 1
- 사천시 고시 제27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----- 3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1224호 도로사용(임시개통) 개시에 관한 공고 ----- 4

## 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1216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입법예고 ----- 6
- 사천시 공고 제1218호 사천시 이·통·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입법예고 ----- 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고시 제2021-268호

##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

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『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(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)제3항 및 제59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)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6일

## 사 천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본 사업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,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3. 사업비 : 550백만원
4. 주요 사업내용

사업분야	세부사업	사업개요	사업비 (백만원)	비고
합 계			550.0	
가꾸내(가천천) 정비			550.0	
	가천천 정비	○ 하천정비 L=134m, B=10~12m (전석쌓기, 전석농기, 징검다리, 계단, 홍수방호벽, 보강도블럭쌓기, 벽화) ○ 도로정비 L=134m, B=5m ○ 용지보상비 등	550.0	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5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
6. 사업시행기간 : 2020년 ~ 2022년(3년간)

7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일 련 번 호	소재지		지번	지 목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면	리			대장	편입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내용	
합 계					2,462							
1) 가꾸내(가천천) 정비					2,462							
1	사남	가천	296	천	231	1	한국농어촌공사					
2	"	"		천	180	56	한국농어촌공사					
3	"	"		천	23,785	2,246	국(국토교통부)					
4	"	"		답	564	111	김 * *	간치소로 **				
5	"	"		도	232	1	김 * *	간치소로 **				
6	"	"		답	9	9	김 * *	간치소로 **				
7	"	"		답	22	9	김 * *	간치소로 **				
8	"	"		대	545	7	김 * *	서울 관악구 난곡로 **길 **				
9	"	"		도	2,559	22	국(국토교통부)					

8.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(055-831-3240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271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9. 16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21-7호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주 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사천시 노룡동 975-3번지선 일원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 - 신고번호 : 제2021-8호
  - 공사기간 : 2021. 9. 13.~2021. 12. 31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1. 9. 13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공고 제2021-1224호

## 도로사용(임시개통) 개시에 관한 공고

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임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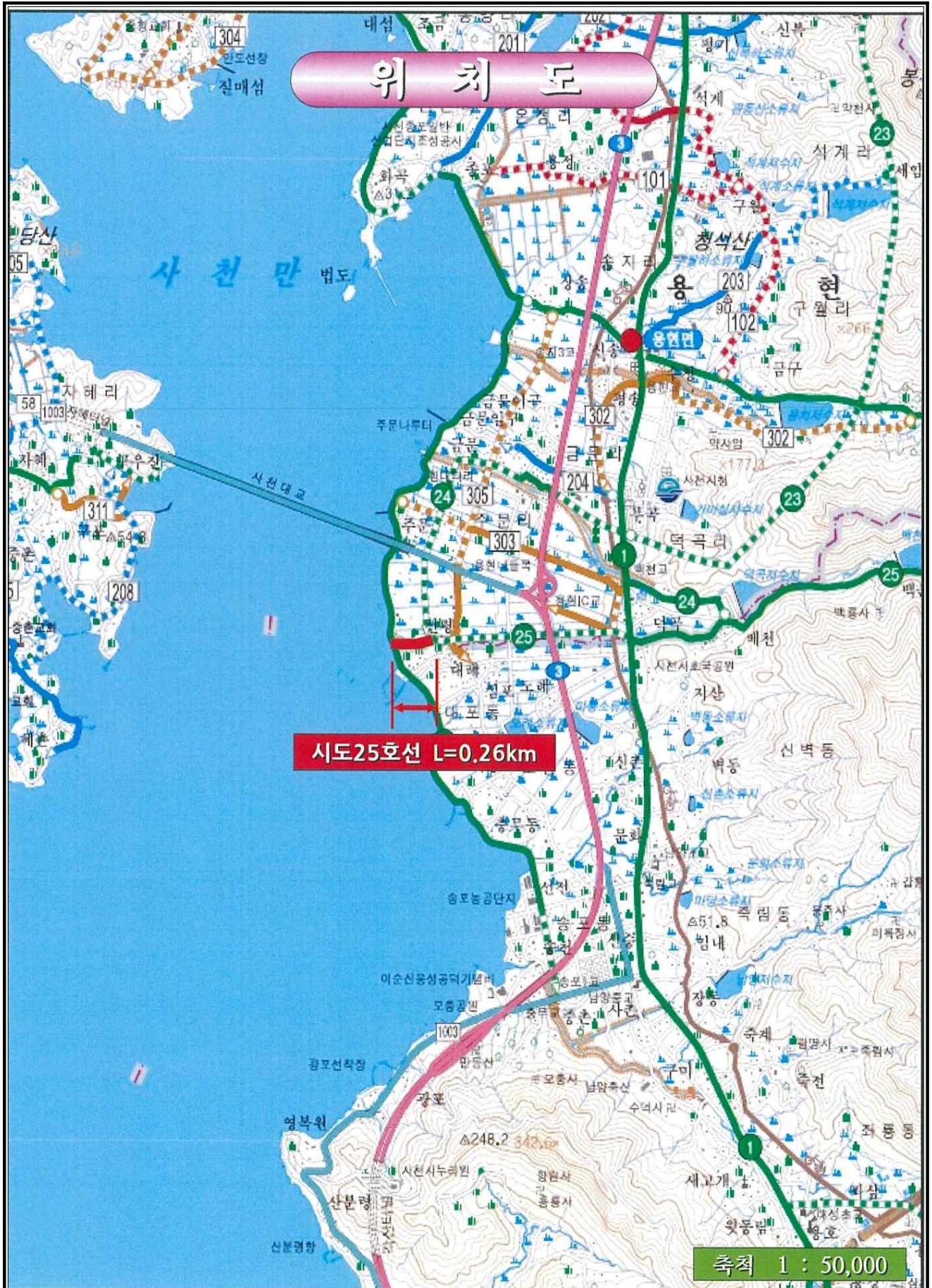
2021년 9월 16일

사 천 시 장 (인)

1. 도로의 종류 : 시도(신평마을 도로 확·포장공사)
2. 노선번호 및 노선명 : 25호선(덕곡~용치)
3. 사용개시구간 : 연장 L=0.26km(신설 2차로)
  - 사천시 대포동 ~ 사천시 대포동
  - 임시사용 기간 : 2021.9.17.~2021.10.17.(31일간)
4. 개시일시 : 2021. 9.17. 00:00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  - 1)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1.09.24.까지
  - 2) 열람장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(☎831-3377)
6. 비 고 : 2021년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임시개통 함.

※ 첨부서류 : 5만분의 1 지형도

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공고 제2021-1216호

「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9월 16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 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법률 인용조문 정비(안 제5조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566, FAX : 831- 6021)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정함”을 “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””을 “이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”으로,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”을 ““재향군인회”란”으로, ““사천시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”를 ““사천시 재향군인회”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향군인”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”으로, “수있다”를 “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3.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<u>정함</u>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함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<u>따라</u> 회원의 자격을 갖춘 <u>자</u>를 말한다.</p> <p>2.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“<u>사천시 재향군인회</u>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-----<u>이란</u>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---.</p> <p>2. “<u>재향군인회</u>”란 ----- ----- “<u>사천시 재향군인회</u>”----- -----.</p>
<p>제4조(예우) <u>재향군인에게</u>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예우) <u>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재향군인----- ----- <u>수</u> 있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</p>	<p>제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</p>

을 지원 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 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3.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

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3.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
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삭 제>

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 
현장 순례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 
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  
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  
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 
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 
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  
다.

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 
지원받는 자는 「사천시 지방보  
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용결  
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 
여야 한다.

<삭 제>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제5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16. 5. 29.>

1. 육군·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
2.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
3.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6조(조직)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(職場支會)·연합분회(聯合分會)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,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회를 두며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 <개정 2013. 8. 13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삭제 <2016. 5. 29.>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공고 제2021-1218호

「사천시 이·통·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9월 16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이·통·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별용동 공동주택 신축 및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통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,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별용동 통·반장 정수 조정

-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·반 신설: 2개 통, 6개 반 증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- 용강서희스타힐스 신축(418세대) { 43통 신설, 1~3반 신설  
44통 신설, 1~3반 신설

나. 선구동 반장 정수 조정

○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: 1개 반 감

- 선구동 제8통 1개 반(5반) 감, 동서금동 제7통(3반)으로 이관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570, FAX : 831- 6021)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이·통·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사천시 규칙 제 호

## 사천시 이·통·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 이·통·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[별표 2]

##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(제4조 관련)

행정동명	정 수	통 수
합 계	162	162
동서동	35	35
선구동	23	23
동서금동	20	20
별용동	44	44
향촌동	20	20
남양동	20	20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[별표 3]

## 사천시 읍·면·동 반장 정수(제6조 관련)

읍면동	정 수
<b>합 계</b>	<b>1,565</b>
사천읍	212
정동면	151
사남면	123
용현면	91
축동면	28
곤양면	67
곤명면	67
서포면	66
동서동	158
<b>선구동</b>	<b>109</b>
동서금동	110
<b>별용동</b>	<b>217</b>
향촌동	81
남양동	85

# 사 천 시 공 보

제744호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사천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조례

제2조(하부조직)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·면·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,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,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.

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, 반에는 반장을 둔다.

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. 다만,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④ 리·통은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. 다만,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이·통장의 임명 등) 이·통장의 임명 및 정수, 행정리·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반장의 임명과 정수)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